

출연요율(제5조제2항 관련)

1.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

구분			요율
기준요율			연율 1만분의 13.5
차등요율	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/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	1 미만	-연율 1만분의 2
		1 이상 2 미만	-연율 1만분의 1
		2 이상 3 미만	0
		3 이상 4 미만	+연율 1만분의 1
		4 이상	+연율 1만분의 2
출연요율			기준요율+차등요율

비고

가. 총 출연금액의 산정 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.

나.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 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.

2.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

출연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한다.